##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6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 안호영·김윤덕·김수흥

이상직・윤준병・김성주

이용호 · 이원택 · 신영대

송옥주·이동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통계청 발표(2020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수십년 전부터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어촌·산촌을 중심으로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과 인구 유입이 멈춰 농촌·어촌·산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경제규모의 축소는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 비스의 경영부진·공급중단과 소매업 등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인구감소위험지역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1호).
- 다.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특성에 맞도록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창출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12호 신설).
-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 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 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 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 항).

#### 법률 제 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구감소위험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농산어촌 등"을 "농산어촌,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농산어촌 등"을 각각 "농산어촌,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 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단"을 "지원단(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 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시·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인구감소위험지역"이란 인 <신 설> 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 려되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 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 10. (생략)
-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u>농산어촌 등</u>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2. ~ 16. (생 략)
-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u>농산어</u> <u>촌 등</u>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 상황지역, <u>농산어촌 등</u>의 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치)①(생략)
  - ② (생 략)
  - 1. ~ 11. (생 략)

<신 설>

	1. ~ 10. (현행과 같음)
	11
	<u>농산어촌, 인구감소위험지역</u>
	<u> 드</u>
	12. ~ 16. (현행과 같음)
제	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u>농산어</u>
	촌, 인구감소위험지역 등
	1. ~ 4. (현행과 같음)
	5
	<u>농산어촌, 인구감소위험</u>
	지역 등
제	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 <u>12.</u> (생략)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기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들수 있다.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 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제

① (생 략)

1. ~ 4. (생 략)

<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u>산업통상자원</u>
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
가균형발전지원단을, 행정안전
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
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
② 지원단(제1항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지원단 또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지원단을 말한다. 이하
<u>같다)</u>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 <u><신 설></u>

<u>5.</u> (생 략)

6. (생략)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가 추진하는 <u>국가균형</u> 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 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5. 관할 시·도 인구감소위험지
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위험
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

② (현행과 같음)